

環境保險市場의 活性化 方案

洪 淳 球

(保險開發院 研究委員 · 保險學博士)

目 次

- I. 머리말
- II. 環境危險의 特性
- III. 環境保險의 需要
 - 1. 企業의 需要
 - 2. 社會的 保障裝置로서의 需要
- IV. 環境保險의 供給
- V. 環境保險市場의 活性化 方案
 - 1. 賠償請求型 保險契約의 導入
 - 2. 保險會社의 大型化
- VI. 環境保險의 損失抑制機能
- VII. 共同保險平율
- VIII. 強制保險
- IX. 맺음말

I. 머리말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産業化의 추진과정에서 有毒性 産業廢棄物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방출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열악한 環境保護體制下에서 汚染物質의 배출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잠재적 環境危險을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두가지, (1) 事前에 環境汚染危險을 통제하는 수단과 (2) 事後에 汚染의 被害를 효율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중 環境汚染危險統制方案은 汚染物質에서 발생하는 損失의 頻度나 規模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損失統制技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費用과 經濟性的의 관점에서, 어느 수준의 汚染物質排出은 기업생산활동의 필수적인 부산물이라 하겠다. 결국, 효과적으로 環境危險을 관리하기 위하여 環境汚染統制方案과 동시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이미 우리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그리고 미래에 배출되는 汚染物質의 危險에 대비한 효율적인 보상수단으로서의 環境保險이라는 제도이다.

이 論文은 우리나라의 미약한 環境保險市場의 現況을 진전시키기 위한 연구의 일환이다. 本稿에서는 環境危險의 保險化 可能性을 진단해 본 다음, 市場經濟의 관점에서 민간 주도의 環境保險市場을 성립·확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그 補完策으로써 정부당국과 집합적으로 취할수 있는 수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II. 環境危險의 特性

어떤 상품의 需要와 供給의 동기(Incentive)를 분석하는 것은 市場經濟體制下에서의 資源分配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環境危險을 保險化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民間市場이 적절한 교환조건에 의해 효율적인 資源分配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절대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環境保險이라는 제도가 汚染危險을 商品化시켜 市場에서 분배하는데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상품은 재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環境保險市場의 성립가능성을 좀 더 완전하게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環境危險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일반적으로 담보가능한 위험이 가지는 성격과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保險業者는 純粹危險(Pure Risk)만을 담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모든 순수위험이 담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의 대상인 바람직한 순수위험은 다음과 같은 條件들을 갖추고 있다.¹⁾

첫째로 相互獨立의인(Stochastically Independent) 다수의 同質의인(Homogeneous) 危險이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로 損失은 그 발생의 原因, 時期, 場所 그리

고 損害額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세째로 損失의 發生은 偶然的이고 故意性이 없어야 한다.

네째로 損失은 確定的이고 測定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로 保險料는 市場性을 고려해 경제적이여야 한다. 즉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에게는 과도하지도 보험사업자에게는 미흡하지도 않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損失은 保險會社가 취급하기 곤란할 정도로 大い變적(Unmanageably Catastrophic) 이어서는 안된다.

대체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보험이라는 危險轉嫁方案은 위험의 結합(Pooling of Risks)을 통해 實際損失을 平均損失로 대체시켜 목적인 바대로 그 충격을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보되는 위험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란 흔하지 않다. 특히 汚染物質에 의한 環境危險의 경우는 이러한 保險化 可能性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²⁾

첫째로, 産業廢棄物 또는 海洋汚染 등에 의한 環境危險들은 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統計學的인 相互依存關係(Stochastically Positive Interdependence)에 있다. 이 경우 손실은 大型化하고 결과는 大異變의이 될 것이다. 즉, 環境汚染物質은 지하 수질오염, 토양오염 또는 해양의 오염을 통하여, 일단 악영향이 나타나면 다수의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1) 거의 모든 保險學 教科書가 보험의 必修 要件으로서의 純粹危險의 성격을 檢討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동훈 교수의 「保險論」(1993)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보다 專門의인 學術論文으로는 부보대상이 되는 위험을 技術, 經營, 經濟, 그리고 社會의 네 分野에서 연구한 “保險成立의 條件과 限界에 관한 一研究”(박은희, 1988)가 있다.

2) 環境危險의 特性을 규명한 다른 연구로는 “環境危險의 保險化 方案”(박은희, 1991), “環境保險의 利用에 관한 少考”(이재현, 1991) 등이 있다.

피해를 입히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법제도의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被害救濟方案으로서의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環境汚染責任에 관한 새로운 법 또는 판례가 나오면 그 적용은 유사한 경우의 賠償責任訴訟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環境危險의 경우 事故發生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구체적인 因果關係를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無過失責任 또는 連帶責任主義의 경향은 最終汚染賠償責任者를 규명하는데 있어 새로운 법정소송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상호의존도가 높은 環境危險은 다수의 個別危險들이 결합되어도 그 平均危險의 減少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은 大異變的이 되는 경향이 있어 環境危險의 保險化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環境危險의 保險化에의 난점은 손실발생의 原因과 時期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석면(Asbestosis)의 경우에 석면의 섬유질(Fiber)이 인체의 폐로 흡입되어 발병하는 시기까지의 잠복기간은 20년이 걸리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석면의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는 동일한 위험이 있는 여러 작업 현장에서 일해 온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 事故原因發生의 時期와 被害發生의 時期와는 20년이라는 간격이 존재하므로 명확한 손실 발생의 시기와 장소를 확정하기가 곤란하고 따라서 최종적 배상책임자를 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一般 産業廢棄物의 경우도 여러 기업들이 배출한 汚染物質들이 오랜시간을 거치는 동안 여러 경로를 거쳐 누적된 결과로 環境이나 人體에 미치는

악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加害行爲와 被害間의 명확한 因果關係를 설정하기가 곤란하고 汚染排出業者間의 賠償責任을 분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세째로, 環境危險으로 인한 사고는 급격하고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점진적이며 계속적인 汚染排出行爲로부터 발생하며, 또한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汚染物質 取扱者와 管理者의 故意性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오염원인자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賠償責任을 유발(Trigger)하는 保險事故가 과연 담보기간내에 발생하였는가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의적인 오염물질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은 道德的 危害(Moral Hazard)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오염원인자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保險會社가 賠償責任을 인정하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째로 지적하여야 하는 문제점은 環境危險은 미래의 損失額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市場性을 고려한 합리적인 保險料 算定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아직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이 합리적 피해보상방안으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環境危險에 관한 統計量의 不足, 관련법규의 불명확한 적용범위와 해석, 그리고 連帶責任制하에서 보험사간의 책임 분담 등은 손실액 예측에 큰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을 고려해야 하는 保險業者에게 높은 保險料를 책정하게 할 것이며, 높은 보험료는 環境保險 需要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보험가용성문제(Availability Problem)를 유발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해야 할 점은 環境保險은 현재나 미래의 오염배출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피해뿐 아니라 과거의 생산활동으로부터 이미 우리 환

경에 산재되어 있는 汚染物質의 危險에 대해서도 취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溯及的(Retroactive) 性格을 갖는 것으로 기존의 미래의 위험을 대비한 保險約款으로는 보험계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III. 環境保險의 需要

1. 企業의 需要

앞장에서 논의한 環境危險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큰 大規模 危險으로 특징 지을 수 있겠다. 이러한 특성은 需要와 供給의 관점에서 두가지 상반된 영향, 즉 수요의 증대와 공급의 위축을 초래한다.

기업에서 보험이 다른 代替的인 危險管理方案 즉, 危險保有(Risk Retention), 損失豫防(Loss Prevention) 또는 損失輕減(Loss Reduction)의 기법보다 적합한 경우는 環境危險의 경우처럼 손실 발생의 확률은 낮으나 손실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環境危險의 심대한 不確實性和 異變的인 損害規模는 비록 강제적인 법적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성 확보의 측면에서 環境保險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더우기 產災保險이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雇用保險의 경우처럼 環境保險이 強制保險으로 法制化될 경우 그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하겠다.

2. 社會的 保障裝置로서의 需要

環境危險責任賠償은 가해 원인자가 밝혀져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경우라도 피해자는 항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環境汚染의 경우 일단 被害가 발생하면 다수의 불특정인에게 대규모로 나타나므로 그 피해액은 이

변적이 되어 加害者의 財政能力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석면에서 오는 것처럼 잠복기가 긴 職業病的 경우 오염물질배출업자가 기업을 청산 정리한 후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被害者가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방안의 하나로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안정의 측면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IV. 環境保險의 供給

環境危險의 特性을 고려할 때 環境保險의 충분한 잠재적 수요를 예상할 수 있으나 供給의 창출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예를 들더라도 環境保險市場은 資源分配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원인은 供給의 萎縮에 있다. 특히 美國의 경우 環境保險의 供給은 대규모 오염사고가 있을 적마다, 그리고 保險業者에 불리한 법적배상 판결이 있을 적마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왔다. 그 결과로 심지어는 環境保險이 強制保險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汚染物質排出業者들이 보험업자들의 공급중단으로 인해 보험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美國에는 賠償責任保險을 구입할 수 있는 3500개 정도의 損害保險社가 있으나, 이러한 保險會社들이 環境保險을 판매하는 것을 제약하는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을 공급하는 保險會社가 거의 없다는 것은 공급의 經濟的 難點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民間保險業者들이 경쟁적인 環境保險市場에서 제기능 즉, 위험선택업무(Underwriting)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공하는 環境保險商品에 適正利益을 볼 수 있는 합리적 가격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앞서 논의한 보험화 난점은 市場性을 상실할 만큼의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게 하여 市場의 失敗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環境保險 需要者들은 (1) 環境危險이 보험상품으로 정착하여 그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다른 市場에서 유사한 代替機能을 가진 保障을 찾거나 (2) 環境危險을 부득이하게 100% 자기인수(Self-insurance)하거나 또는 (3) 고의적으로 汚染物質을 배출하는 극심한 道德的 危害行爲를 할 것이 예상된다. 이중 어느것도 기업이나 사회에 바람직한 방안은 될 수 없다. 環境危險 保險化의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市場性이 있는 합리적 가격을 가진 環境保險商品의 개발에서부터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V. 環境保險市場의 活性化 方案

합리적인 가격으로 環境保險商品의 교환이 市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環境危險을 保險化하는데 따르는 여러 난점들을 상당한 정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보험업자에게 供給의 동기를 갖게 해주는 새로운 環境保險商品의 개발없이 기존의 보험계약방법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環境保險 供給 創出에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環境汚染危險의 담보하기 어려운 특수성들과 관련하여 保險供給者의 측면에서 環境危險을 保險商品化 할 수 있는 몇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賠償請求型 保險契約의 導入

賠償請求型(Claim-made) 保險契約方式은 종래의 事故發生型(Occurrence) 保險契約에서 事故發生의 불명확한 개념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美國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새로운 保險契約形態이다. 1986년 미국 ISO(Insurance Services Office)는 CGL보험(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일명 포괄적인 책임보험)에 이 방식을 도입했다. 종래의 事故發生型 保險契約이 保險契約期間중에 발생한 사고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배상이 청구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보상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賠償請求契約은 미리 약정한 소급일(Retroactive Day)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계약기간(Policy Period, 일명 담보기간이라고도 함)내에 賠償請求를 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保險契約方式이다. 이 두가지 보험계약의 차이는 아래의 醫療事故賠償責任保險(Medical Malpractice Insurance)의 契約의 例에서 잘 나타난다.³⁾

5년전에 잘못된 수술을 이유로 患者에게 賠償責任 소송을 당한 醫師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사고 발생기준에 의하면, 지금 賠償請求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5년전 위험을 담보했던 保險業者가 被害報償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배상청구기준에 의하면, 5년전 부실한 수술이 被害發生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현재 보험계약중인 보험업자에게 賠償責任이 귀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배상청구형 보험계약은 명확하게 설정된 유효계약기간내에 이루어지는 배상청구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계약이므

3) 이 例는 *Principles of Insurance*(Rejda, 1987)에서 인용했음.

로 사고발생형 보험계약의 Long-Tail에서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고 있다. 環境汚染危險의 경우에서도 배상청구형보험계약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이 保險化 難點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遡及日字와 既存의 汚染物質

賠償請求型 契約에서 소급일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賠償請求型 契約에서는 어느 지정한 날 즉, 소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부터 기인하는 피해에 대하여 그 補償請求가 담보기간내에 접수되어야 보험회사는 賠償責任을 진다. 이러한 遡及日의 適用은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하는 汚染物質로 부터의 被害補償뿐만 아니라, 과거의 汚染放出行爲로 이미 우리 환경에 산재해 있는 위험에 대한 피해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오염배출업체는 필요에 따라 소급일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기간별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環境保險商品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생산활동의 변화로 1년 전보다는 3년전에 有害物質을 많이 배출한 업체의 경우, 상이한 소급일과 상이한 담보기간의 적용은 보다 정확하게 위험에 기초한 保險料(Risk Based Premium)를 산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요약하면 효율적인 遡及日의 適用은 우리의 환경에 방치되어있는 기존의 汚染物質의 위험을 합리적 가격으로 보험상품화 시켜줄 수 있다.

(2) 綜合支給限度額과 大異變의 損失

보험업자가 環境保險을 공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손실이 장기간에 걸쳐 不特定

多數人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 損失額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賠償請求型 契約에서 綜合支給限度額(Aggregate Limit) 規程은 유효보험기간 중 보험업자가 지불하는 최대한도의 保險支給金額을 명시함으로써 보험업자를 大異變의 損失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事故發生型 契約의 지급한도액(Policy Limit) 규정과는 다르다. 사고발생형 계약에서의 지급한도액은 한번의 오염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여러개의 賠償請求마다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변적 손실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배상청구형 계약에서 綜合支給限度額 規程은 대이변적 손실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한정된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環境危險을 통제함으로써 合理的인 環境保險 價格算出에 기여한다.

또한 綜合支給限度額 規程은 불필요한 訴訟費用을 절감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즉, 環境危險의 賠償에는 법적인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험외적인 부문에 많은 비용의 지출을 초래한다. 소송비용이 포함된 종합지급한도액의 설정은 環境危險의 법적인 위험의 일부를 保險契約者에게로 전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 保險業者는 그 본래의 업무인 危險選擇業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다.

(3) 事故發生時期와 賠償請求時期

環境危險의 保險化에 따르는 또 하나의 난점은 汚染物質의 점진적 계속적 유출로 인해 保險事故의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賠償請求型 保險契約를 環境保險에 도입하면 보상을 받는데 있어 정확한 사고시기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예를들어, 어느 汚染物質 取扱者가 폐놀이라는 유해물질을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동안 지속적으로 배출시켰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생태계에 배출된 폐놀은 지하수와 토양오염등 여러 경로를 거쳐 상당한 잠복기가 지난 다음 그 惡影響이 인체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폐놀유출이라는 사건은 5년간에 걸쳐 일어났고 그 악영향은 각 사람들의 체력 위생관리등의 여건에 따라 여러 시점에서 발병으로 나타날 것이다. 賠償請求型 環境保險契約은 피해보상을 받는데 있어 이러한 事故發生의 시기를 명확히 해야하는 어려움을 제거하고 있다. 이 계약은 보상을 받기위해 사고 발생시기와는 관계없이 배상청구가 담보기간내에 이루어지지만 하면 된다. 賠償請求型 契約의 이러한 특징은 담보기간이 경과한 環境危險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保險業者가 環境危險을 保險商品化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道德的 危害問題와 短期 擔保期間의 設定

環境汚染危險은 그 원천적 방지장치 내지는 억제설비장치의 설비에 많은 비용을 요하므로 일단 環境保險에 부보한 업체는 부실한 損失豫防裝置의 설비, 고의적인 汚染物質 流出 등 道德的 危害行爲를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 경우 배상청구형 보험계약에서 短期間의 擔保期間設定은 汚染危險을 보험사업자와 계약자간에 분담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오염배출업체의 道德的 危害行爲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예를들어 擔保期間이 금년 1년인 배상청구형 오염위험배상 책임보험에 부보한 오염배출업자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기업은 금년 1년간은 배상청구형 보험에 의해 汚染危險賠償責任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

나, 금년에 고의적으로 배출한 汚染物質의 폐해가 나타나는 2~3년후의 미래에도 環境保險의 재계약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처럼 배상청구형 보험계약은 담보기간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보험업자와 계약자간의 合理的 危險分擔으로 보험계약자의 故意的 災害行爲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賠償請求型 保險契約의 장점을 요약해보면 보험업자의 관점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손실액을 예측하여 보험금지급에 따르는 不確實性을 감소시켜 市場性있는 합리적 보험료로 環境保險商品을 공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損失額 豫測과 純保險料 算定에서의 개선된 正確度는 보험업자에게 기존의 계약형태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擔保能力을 배양시켜 줄 수 있다. 또한 개선된 損失豫測의 正確度는 再保險契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原受保險社의 擔保能力을 증대시킬 수 있다.

(5) 賠償請求型 契約이 保險需要者에게 주는 惠澤

배상청구형계약은 環境危險의 일부를 보험가입자에게 轉嫁시킨다는 점에서, 또는 부보의 連續性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점만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賠償請求型 契約이 保險供給者에게 주는 혜택은 保險加入者에게도 흔히 돌아갈 수 있다.

첫째로, 배상청구형계약하에서 산정된 安定性있고 合理的인 料率은 보험가입자에게 市場性있는 價格으로 環境保險商品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둘째로, 배상청구형계약에서 명확한 擔保期間의

設定은, 被保險者가 環境汚染責任保險의 補償金을 받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事故時期가 언제이며 또 어느 보험업자가 賠償責任이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소요되는 길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法定節次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단기간의 擔保期間은 종래 Long Tail의 장기계약에서 보험사업자가 요구하는 높은 危險負擔費用(Risk Premium)을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

2. 保險會社의 大型化

環境危險의 경우 각 위험들간의 높은 統計的 相互依存度는 保險化에 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보험사가 한가지 有害物質에 관한 環境危險을 담보하는 것보다는, 大型保險會社가 여러 有害物質에서 오는 여러 環境危險을 동시에 담보하면, 한가지 유해물질에서 오는 위험들간의 상호의존에서 오는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損保社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자본금 규모는 설립기준인 300억원에도 절대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300억원 이상의 회사는 14개사중 3개사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損害保險業界는 自動車保險에서의 만성적인 적자와 保證保險에서의 급격한 損害率 增加로 담보력은 악화된 상태에 있다. 擔保力 比率이 50% 초과한 회사도 7개사나 되고 있다.

汚染危險의 경우 한번의 사고가 통계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여러 위험을 낳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環境保險種目에서 規模의 經濟性(Economy of Scale)과 범위의 경제성(Economy of Scope)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며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大型化는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다.

VI. 環境保險의 損失抑制機能

보험이라는 危險의 轉嫁로서의 危險管理 方案은 道德的 危害動機를 부여하여 汚染物質 排出行爲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한다. 사실 環境保險이라는 배상수단이 전혀 없다면 오염배출업체는 損失抑制·損失豫防에 더욱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배상청구형 보험계약에서와 같이 보험업자와 계약자간의 環境危險 分擔으로 도덕적 위해행위가 항상 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環境保險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다음과 같이 손실예방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⁴⁾

첫째로, 보험업계는, 保險計理學이나 安全工學등의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대안적인 生産品(Alternative Product) 또는 대안적인 生産過程에서 발생할 수 있는 危險을 식별·평가해 줄 수 있다.

둘째로, 보험업자들은 損失豫防 裝置를 고려하여 그 危險度에 입각하여 保險料를 산정함으로써 保險需要者에게 비용 효과적인 손실예방장치를 권장할 수 있다.

세째로, 環境保險市場에서 보험회사들간의 경쟁은 危險分析技術의 지속적인 향상을 유도할 것이다. 만일 어느 보험업자가 擔保危險을 過大評價하여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그 보험업자는 경쟁에

4) Katzman(1988)의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and Catastrophic Environmental Risk"를 참조했음.

서 탈락할 것이 예상된다.

네째로, 보험업계는 기업의 危險管理者들이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에서 오는 損失의 頻度 및 深度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로, 危險管理者는 보험료와 기타 다른 위험관리 방안에 드는 비용을 비교하여 가장 費用效率의인 生産活動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Katzman이 언급한 環境保險이 단순한 危險의 轉嫁 이외에도 손실예방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간단하다. 즉, 環境保險市場이 활성화되어 保險料가 합리적인 競爭價格으로 책정될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擔保危險의 危險程度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위험도를 가진 有害物質을 배출하는 업체는 손실예방책을 강구하여 危險度を 낮추고 그 결과로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하던가, 아니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염배출업체는 비용효율적인 관점에서 保險이라는 補償手段과 損失豫防裝置를 동시에 강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두가지 목표인 효율적인 억제와 정당한 보상의 실현이 정부 당국의 개입없이 個別企業의 水準에서 달성될 수 있다.

VII. 共同保險푸을

보험업자들에 의한 民間保險市場에의 보완책으로, 有害廢棄物 排出業者間的 효율적 담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보험푸을(Pool)의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확한 損失額의 예측이 보험업자가 環境危險을 市場性있는 가격으로 보험상품화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업자들간의 공동

푸을은 汚染物質이 배출되는 특정산업분야에서 일반 보험회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효율적으로 危險選擇業務와 損失豫防策을 마련할 수 있다. 즉,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공동보험푸을은 오염위험자체에 대해 그리고 푸을에 가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예방장치 등을 고려하여 擔保基準을 충족하는 위험에 대해서만 담보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危險度에 따라 합리적인 保險料를 책정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原子力 危險에 대비하여 1991년 푸을을 결성한 적이 있다.

VIII. 強制保險

보험업자들에 의한 自發的 保險市場과 오염배출업체간의 공동보험푸을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나머지 방안은 정부당국에서 環境保險種目を 선정하여 오염배출업체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強制保險制度이다. 즉, 당국의 주도하에 보험푸을을 형성하는 것이다.

強制保險푸을의 가장 큰 강점은 가입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 푸을의 危險分散能力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일 強制保險푸을이 형성되면 民間保險市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自發的 保險市場에서 보험을 구입하기 어려운 많은 영세기업들이 참여하리라고 예상된다.

強制保險푸을의 다른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염배출업체나 그 유통업체에게 훼손된 環境復舊方法의 일환으로 또는 被害賠償方法의 일환으로 재정적인 담보를 법제화하여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많고 또

有害物質의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財政的 擔保規程이 있을 경우 資產規模가 영세한 이들은 自發的 市場에서 環境保險을 구입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결국 재정적 담보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업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업체도 나올 것이다. 이러한 零細企業의 倒産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면 정부는 강제보험푸을을 형성하여 영세기업이 직면한 보험가용성(Availability)문제를 해결하고, 따라서 재정담보규정도 합리적 수준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強制保險푸을의 장점은 法廷訴訟費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連帶責任主義(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입법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판례는 因果關係의 立證責任을 완화하는 법리 구성을 함으로써 汚染者의 책임을 엄격화하고 그 賠償額도 고액화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⁵⁾. 連帶責任의 경우를 예로 들면, 피해를 발생시킨 업체를 확정하기 위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보험업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또는 보험업자들간에 賠償額을 분담하기 위해서 등등 빈번한 法廷訴訟이 예상되고 있다.

強制保險푸을의 형성은 責任所在問題를 완화시켜 많은 법정소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強制保險푸을의 형성은 그 푸을이 충분한 담보능력을 갖추도록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이 필요하므로 政府補助金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자원의 확보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IX. 맺음말

環境汚染物質에서 오는 피해를 보상하는 명확하고도 공정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被害補償體系는 불완전하고 그 실효성은 희박하다. 어느 방향으로든 개선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있는 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 環境汚染賠償責任 保險制度의 정립일 것이다.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의 도입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自律的 市場體制가 효율적인 資源分配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環境保險市場의 잠재적으로 충분한 수요를 고려하면 環境保險市場成立의 成功과 失敗의 여부는 보험사업자들이 市場性 있는 保險料를 교환조건으로 環境危險을 보험상품화하여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環境汚染賠償에 드는 코스트와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을 구입하는데 드는 코스트 즉 保險料와의 구별을 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環境汚染賠償에는 대규모의 損害額이 예측되기 때문에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도 높은 保險料를 책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업자는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擔保危險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언제나 環境保險商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環境危險의 損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需要者와 供給者에게 共に 합리적인 保險料를 산출하는데 있겠다. 이러한

5) “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시론적 검토”(고평석, 1987)를 참조 바람.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環境保險商品, 예를 들면 이 논문에서 제시한 綜合限度額이 명시된 賠償請求型 保險契約 등이 있을 수 있겠다.

競爭的 民間環境保險市場의 成立과 그 活性化는 정부개입하에 이루어지는 強制保險보다 그 목적한 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오염물질배출업체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보험푸울과 위험분산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強制保險푸울의 형성은 競爭的 民間保險市場의 훌륭한 보완 또는 대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東勳, 「保險論」, 학현사, 1993.

高平錫, “污染賠償責任保險制度的 導入에 관한 試

論的 檢討-海洋汚染을 중심으로”, 보험조사월보, 1987. 8.

朴恩會, “保險成立의 條件과 限界에 관한 研究,” 한국경제 제10권, 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연구소, 1988. 8.

———, “環境危險의 保險化 方案,” 보험개발연구, 1991년 제2호 통권 제3호.

李在玹, “環境保險의 利用에 관한 少考,” 보험개발연구, 1991년 제1호 통권 2호.

Katzman, Martin T.,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and Catastrophic Environmental Risk,”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1988 March.

Rejda, George E., *Principles of Insurance*, 3rd Ed.,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7.